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고, 대체 인력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신청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별지서식에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에 따른”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제51조제2항제3호 전단의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을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
개월이 지난 날(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사항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사항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0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사항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1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사항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2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사항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3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내사항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 ----- ----- ----- ----- ----- ----- ----- ----- ---
1. 삭 제	
2. · 2의2. (생 략)	2. · 2의2.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생 략)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

② -----

-----.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

-----.

가. 영 제29조제6항제2호에

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
청

나.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
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
직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
다 신청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3.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
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따른 금액 중 출산전후휴
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
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
개월간의 -----

나. 영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 -----

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
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
자 복직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3.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나목에
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4.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 중 -----

-----.

4.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삭 제>

<삭 제>

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
터 12개월 이내